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2005~21 |
|------------|---------|

| | |
|-------|------------------------|
| 제출연월일 | 2005. 5.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전략사업추진단 장) |

□ 제정이유

- 관내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추진 및 군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장학기금 조성에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 21C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장학재단이 기금조성에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군수는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재단 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재단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재정출연금) 군은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사용)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제출) ① 장학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군의 출연금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결산서 제출) 장학재단은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